

# 법인,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비교

2014년 11월 21일

이 상 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 고액기부와 기부방법

- 기부방법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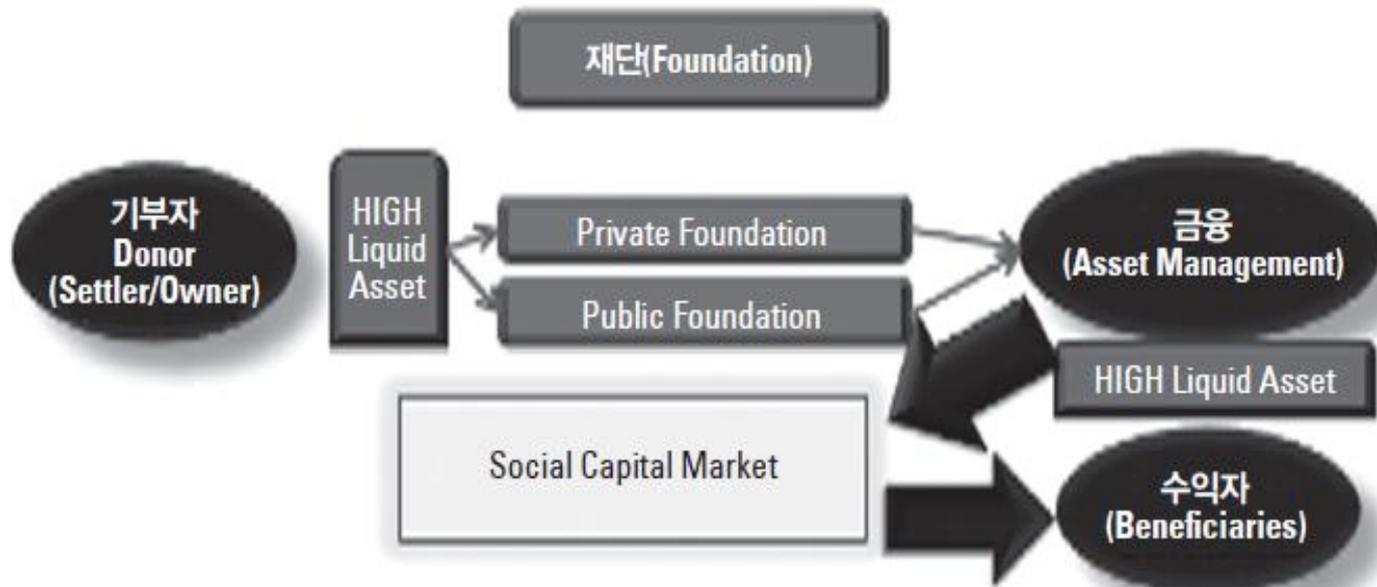
기부에 따르는 출연행위의 모습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의 취득여부를 고려하여 활용되는 계획기부는, 유증, 신탁, 매매, 연금, 개인재단의 설립

- 기부자 의사에 맞는 기부방법

법적검토(기부방법이 법령에 타당한지, 조세혜택 등)와 기부재산에 대한 통제권 소유 여부 확인 필요  
(통제권 소유 희망 시 기부자조전기금, 신탁, 재단설립)

# 재단 설립\_미국

-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과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그림 5-1> 재단(foundation)<sup>8)</sup>

# 재단 설립\_미국

## ●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의 세제혜택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s)
재산세 (Estate Taxes)	생전이전 (lifetime transfers)	살아있는 동안 개인재단으로 이전된 자산은 더 이상 기부자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기부자의 재산 일부로 과세되지 않음
	사후이전 (transfers at death)	사후에 유산기부에 의해 개인재단에 가는 자산은 기부자의 재산에서 공제됨. 따라서 기부자의 재산 일부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Income Taxes)	생전이전 (lifetime transfers)	개인재단으로의 이전은 기부자의 현재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함. 이 공제는 총소득의 30% (공공 자선단체는 50%)로 제한됨. 개인재단에 준 평가 주식과 자산에 대한 공제는 기부자의 소득 20%까지 가능함.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추어서 향후 과세 연도에 허용되는 최대 비율 범위 내에서 총 자선 공제로 사용할 수 있음
	사후이전 (post-transfer)	개인재단은 자선단체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됨. 그러나 개인재단은 투자 소득의 2%를 세금으로 지불해야함. 자선단체로의 재단의 자금분배액을 늘리면 이를 1%로 줄일 수 있음. 개인 재단은 영리사업을 운영하거나 영리사업의 상당 점유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영리사업의 소유권을 기부 받으면 재단은 5년 내로 자신의 이익권을 팔 수 있음

# 재단 설립\_미국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s)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es)	개인재단으로 평가자산이 이전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음. 개인재단이 평가자산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증여세 (Gift taxes)	개인재단으로 이전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음

<표 5-1> 개인재단의 세제 혜택

# 재단법인\_우리나라

- 사단,재단,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그림 5-2> 법인의 구별

# 재단법인\_우리나라

## ● 공익재단의 조세지원

		공익재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생전이전	살아있는 동안 공익재단으로 이전된 자산은 더 이상 기부자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고, 공익재단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후이전	사후에 유산기부에 의해 공익재단에 가는 자산은 기부자의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부자의 상속재산 일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손금 산입 특례	①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② 손금산입 한도는 이자소득금액 등×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
	소득 신고 방법의 특례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됨.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 재단법인\_우리나라

## ● 공익재단의 조세지원

	공익재단법인
<p>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es)</p>	<p>① 공익재단으로 평가자산이 부담부증여로 이전될 경우에만 기부자는 부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p> <p>②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p>
<p>부가가치세와 지방세</p>	<p>①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p> <p>② 공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호화 사치성 부동산 제외)이나 과세표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함</p>

<표 5-2> 공익재단의 조세 지원

# 재단법인\_우리나라

- 공익재단의 조세지원 제한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목적사업을 정당하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을 두고 있음

## 출연재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미이행시, 증여세 부과

## 임원에 대한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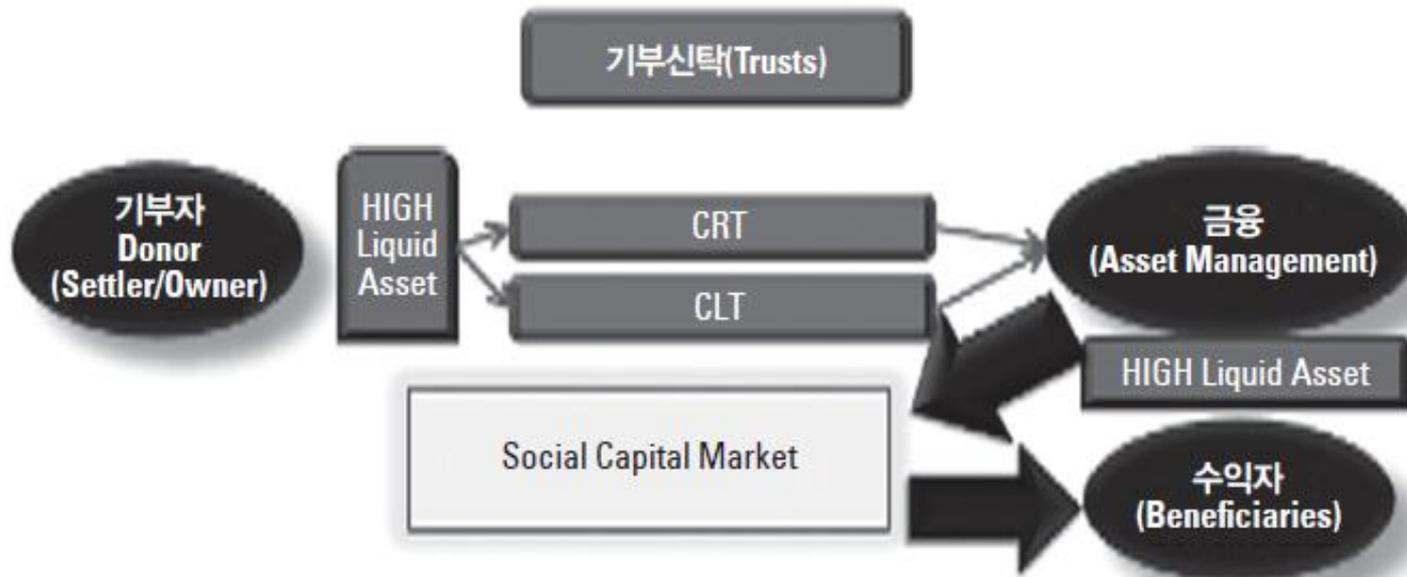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수 증감가능)

이사회 구성에서 특수관계자수는 이사현원의 1/5 초과할 수 없음

감사는 특수관계자가 취임할 수 없음

# 신탁설정\_미국

-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



<그림 5-3>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sup>24)</sup>

# 신탁설정\_우리나라

- 공익신탁

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공익목적 실현, 기능은 재단법인제도와 유사하지만 재단설립에 비해 기존의 수탁자의 법인격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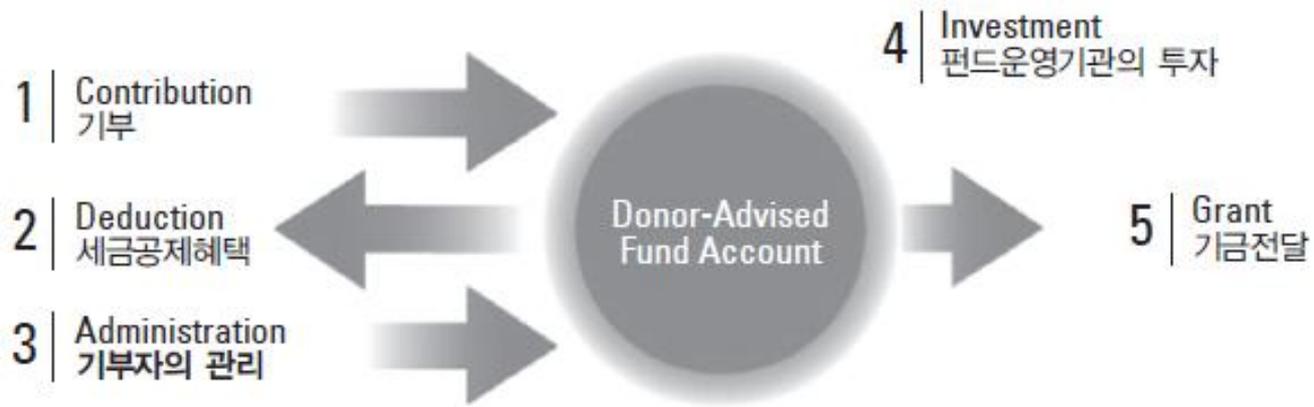
- 관련 법

신탁법 : 공익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 현재에는 신탁법에 따라 설립. 미국 법상의 CRT와 유사한 제도로써 사회환원기부신탁이 도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탁자 사망 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신탁으로 신탁 설정 시 공제 혜택이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되었으며, 2014년 3월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익신탁법 : 2015년 3월 19일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①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③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기부자조언기금\_ 미국 (Donor Advised Fund)

## How a Donor-Advised Fund Works



<그림 5-4> 기부자조언기금의 작용흐름

# 기부자조언기금\_우리나라

: Donor Advised Fund)

-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6월 신한금융투자의 금융상품으로 개발, 기금 규모가 크지 않음
- 금융상품의 하나로 미국과 별다른 차이 없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기업 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비영리법인 쪽에 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
-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특수비영리법인에 기금을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 결론

## 1. 기부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기부 틀(vehicle) : 미국

- 생활보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큰 액수를 기부할 경우,  
→ 재단(Foundation)
- 상당한 재산과 생활보장을 고려할 경우,  
→ 신탁 (Trust)
- 상당한 재산이나 생활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기부자조언기금 (Donor advised Fund )

# 결론

## 2. 외연의 확대 : 우리나라

- 100억원 이상  
→ 재단설립

관리비용은 재산의 규모에 비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5분의 1 범위에서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주 내에서는 상속 등의 대체수단이 가능

- 7억원 미만  
→ 기부자조언기금

7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기본재산을 통한 운용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런 경우, 기부자조언기금을 통해 기부자의 의도에 따른 공익사업이 가능

# 각 제도들의 특성 비교

## ● 집합투자기금과 자선잔여신탁

		집합투자기금(PIF)	자선잔여신탁(CRT)
설립조건 및 최소 조건		즉시설립가능 통상 \$10,000 ~ \$20,000	몇 주의 시간과 설립비용 수반 통상 \$200,000 이상
설립비용 및 관리		없음. PIF자산에서 관리비용 공제	법적 비용 요구되며 매년 유지비용 과 세금신고 비용은 신탁에서 지불
수익자 수		최대 2명	제한 없음
수령 가능한 재산		재단의 판단에 따름. 대부분의 재산이 가능하지만, 면세유가증권이나 그것을 가진 뮤추얼펀드는 받을 수 없음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대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음
세제 혜택	소득세	수익자 기대수명과 펀드의 수익율에 따른 부분공제	지출조건과 IRS의 기대수명표에 따른 부분공제
	자본이득세	회피 가능	회피 또는 이연 가능
	수령한 소득	통상소득으로 과세	중복적(tiered) 세제 혜택
투자관리		기부자가 분배 선택	신탁(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통제함
소득 혜택	소득	투자성과에 따라 결정	투자성과에 따라 결정
	지불	투자 성과에 따라 가변적(잠재적으로 점증 가능성)	신탁 설정조건에 따르므로 CRAT 고정/, CRUT 가변
	추가 출연	가능	CRAT 불가/ CRUT 가능

		집합투자기금(PIF)	자선잔여신탁(CRT)
수익자	잔여물 귀속	수익자 수 탄력적이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DAF도 수익자 될 수 있음.	신탁계약서에 리스트된 수익자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DAF도 수익자가 될 수 있음
장래 가족 참여		가능. DAF도 계정의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후손도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음	가능. DAF도 계정의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후손도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음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쉬운 설립과 유지</li> <li>2. 모든 자본이득세 회피</li> <li>3. 소득지출의 증가 가능성</li> </ol>	운영 전반의 탄력성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령가능한 재산의 제약</li> <li>2. 소득 미지급 가능성</li> </ol>	복잡하며 상당한 비용 소요

<표 5-3> 집합투자기금, 자선잔여신탁의 특징 비교 <sup>66)</sup>

# 각 제도들의 특성 비교

## ● 기부자조언기금과 개인재단

특징	기부자조언기금(DAF)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
설립비용과 소요시간	없음(즉시 설립)	법률상 비용 및 설립비용. 통상 수 주 이상의 시간 소요
투자시 기부자 역할	투자 풀 중 투자 배분 추천	특정한 룰에 귀속되나 투자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
기부자의 행정적 책임	선호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추천권	자산관리, 기록관리, 자선단체의 선택, 각종 세금신고, 이사회 유지 등
기부시 기부자 역할	기부금 수령 단체에 대한 추천권	특정한 룰에 귀속되나 투자관리에 대한 전반적 통제권
기부자 가족의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부자는 추가적인 기부조언자 계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음</li> <li>2. 기부자의 사망 후 모든 계정에 후손으로서 개인 이름을 붙일 수 있음</li> </ol>	기부자는 친척을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운영에 관계된 상근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특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음
프라이버시 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능.</li> <li>2. 기부자는 기부추천자로 또는 익명의 기부자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 있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가능</li> <li>2. 매년 IRS Form990에 따라 자산, 기부금, 기부지출액 등을 등록해야 함</li> </ol>

# 각 제도들의 특성 비교

특징	기부자조연구금(DAF)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
프라이버시 보호	1. 가능. 2. 기부자는 기부추천자로 또는 익명의 기부자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 있음	1. 불가능 2. 매년 IRS Form990에 따라 자산, 기부금, 기부지출액 등을 등록해야 함
소득세 공제	1. 현금은 AGI 최대 50% 2. 평가재산은 AGI 최대 30%	1. 현금은 AGI 최대 30% 2. 평가재산은 AGI 최대 20%
의사결정시 기부자역할	다양한 "도덕적 통제"	기부자의 이사회 통제
소비세(excise tax)	과세 안됨	통상 매년 순투자소득의 2% 과세
기부자 명의 계정	가능	가능
익명기부	가능	불가능
사후계승	다양화	이사회
원본의 기부 조건	1. 개인 차원에서는 없음 2. 신탁 차원에서는 연 5%	1. 있음 2. 연 5%

<표 5-4> 기부자조연구금과 개인재단 비교 <sup>67)</sup>